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59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안자 : 목포시장

1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1. 사업목적

- 신항배수지 신설로 목포 신항 및 해경서부정비창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신항배후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치 : 목포시 달동 산1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규모
 - (토지) 40필지(국유지), 총 시설부지(16,080m²)
* 배수지(8,718m²), 도로(7,362m²)
 - (시설) 배수지 : 시설용량. V=7,000m³/일
* 금회 V=4,000m³/일, 장래 V=3,000m³/일
송수 및 배수관로 : D400mm, L=1.651km
도로 : 폭원 B=6.0m, L=437m, ASP포장
- 사업비 : 9,184백만원

3.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

- 대상 : 달동 산172번지 외 39필지(A=16,080m²)
- 취득방법 : 감정평가액 매입

4. 지금까지 추진사항

- '21.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 12 ~ '22. 03 : 항만시설내 배수지 설치부지 협의(해양수산부)
- '22. 05 : 국·공유지 토지 사용허가 승인
- '23. 03 : 목포시 건설기술심의 완료
- '23. 0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
- '23. 09 : 일반수도사업인가 승인
- '23. 10 : 목포시 공사원가 심사 및 물품구매 계약심의등 승인(예정)
- '23. 10 : 2023년 제4회 목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10.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5. 앞으로 추진계획

- '23.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23. 12. : 공사착공(예정)
- '25. 09. : 공사준공(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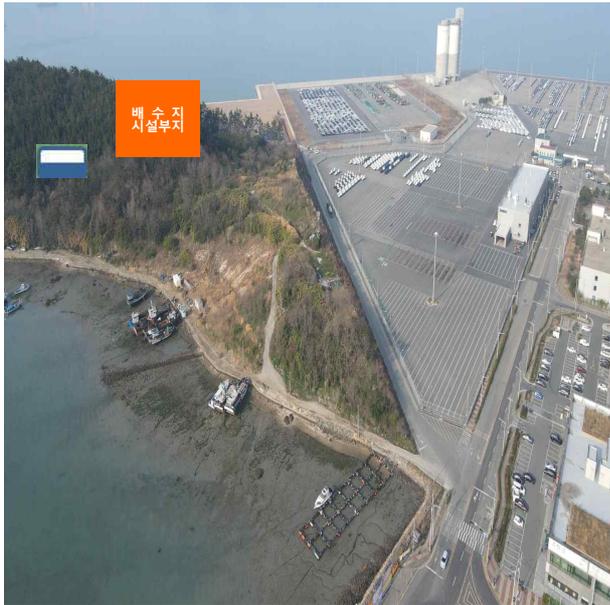
6. 첨부 서류

- 편입토지 조서, 위치도 및 시설계획도 각 1부.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 관련법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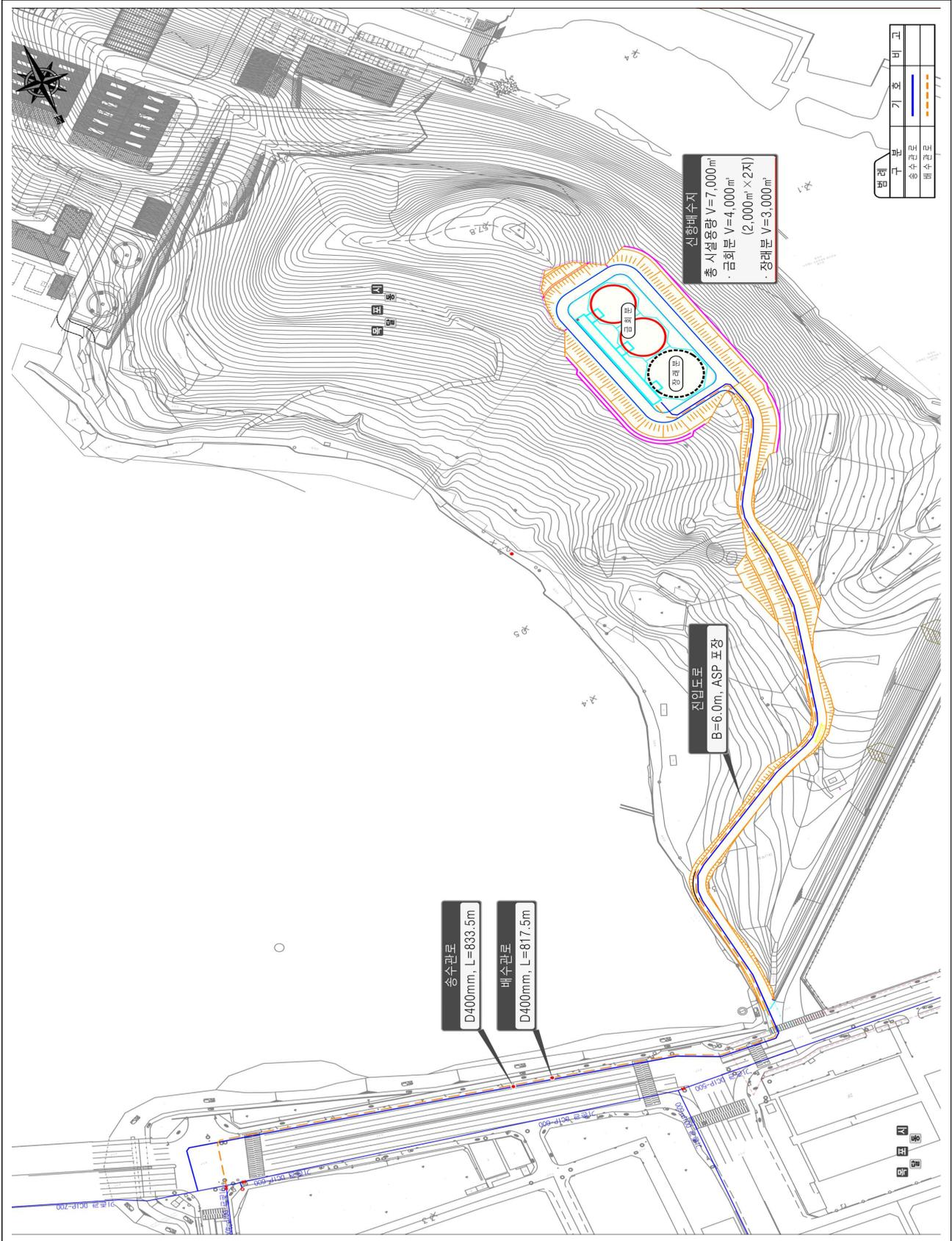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목포시 달동 965-1	묘	499	369	국(해양수산부)	도로
2	목포시 달동 966	묘	721	83	"	도로
3	목포시 달동 967	대	298	157	"	도로
4	목포시 달동 1252-1	도	1,579	237	"	도로
5	목포시 달동 968	대	367	244	"	도로
6	목포시 달동 969	대	347	231	"	도로
7	목포시 달동 968-1	대	20	1	"	도로
8	목포시 달동 970	대	493	112	"	도로
9	목포시 달동 980	대	407	50	"	도로
10	목포시 달동 975	대	555	306	"	도로
11	목포시 달동 979	대	387	1	"	도로
12	목포시 달동 976-1	전	403	17	"	도로
13	목포시 달동 978	도	7	7	"	도로
14	목포시 달동 976	도	13	1	"	도로
15	목포시 달동 978-1	전	410	73	"	도로
16	목포시 달동 1037	전	198	147	"	도로
17	목포시 달동 1038	전	43	7	"	도로
18	목포시 달동 1038-2	도	79	29	"	도로
19	목포시 달동 977	전	129	86	"	도로
20	목포시 달동 1036-1	전	218	41	"	도로
21	목포시 달동 1036	도	56	13	"	도로
22	목포시 달동 1038-1	전	2,438	290	"	도로
23	목포시 달동 1035-1	전	397	82	"	도로
24	목포시 달동 1034	전	46	46	"	도로
25	목포시 달동 1033	전	3,189	312	"	도로
26	목포시 달동 1032	전	76	76	"	도로
27	목포시 달동 1027	전	1,699	365	"	도로
28	목포시 달동 1031	전	393	39	"	도로
29	목포시 달동 1029	전	1,392	963	"	도로
30	목포시 달동 1030	학	198	40	"	도로
31	목포시 달동 산172	임	25,388	5,743	"	도로, 배수지
32	목포시 달동 산173-3	임	1,653	1,088	"	도로, 배수지
33	목포시 달동 산173-1	임	1,974	868	"	배수지
34	목포시 달동 산173-2	임	2,007	844	"	배수지
35	목포시 달동 산173-4	임	3,238	1,138	"	배수지
36	목포시 달동 산175	임	5,256	299	"	배수지
37	목포시 달동 산182-2	임	19,074	37	"	배수지
38	목포시 달동 산174	임	3,867	1,403	"	배수지
39	목포시 달동 1362	도	7,704.9	120	"	도로
40	목포시 달동			115	"	공유수면 (도로)
합 계		40필지	87,218.9	16,080	-	도로:7,362㎡ 배수지:8,718㎡

위치도



시설계획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2-1)

회계명 : 상수도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6,080 (40필지)	1,039				1	16,080 (40필지)	1,03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6,080 (40필지)	1,039				1	16,080 (40필지)	1,039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2-2)

회계명 : 상수도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m ²)				
1	임야 등 (40필지)	목포시 달동 산172 외 39필지	16,080	1,039	'24년 상반기	목포 신항배수지 조성	

-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관련 법규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예산을 의회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 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